

의안번호	제 331 호
의결년월일	1998. 2. 10. (제 41 회)

의
결
사
항



고성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자	최정춘의원외3인
발의년월일	1998. 1. 30.

고성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1
----------	-----

발의년월일 : 1996. 1. 30.

발 의 자 : 최정호 의원 외 3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95. 12. 30 대통령령 제14877호)과 국내여비규정 개정('95. 12. 29 대통령령 제14857호)으로 지방의회의원 회의수당지급기준및 여비의지급액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보완·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가. 회의수당지급단서조항 신설 (안 제3조제1항)
- 나. 여비지급기준 변경 (안 별표1)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4877호)
- 국내여비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4857호)

고성군의회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의회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의 후단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 의 숙박비 및 식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제6조제3항 관련)

구 분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의 장 부의장	37,500	25,000
의 원	18,000	18,0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p>제3조(회의수당지급) ① 회의 수당은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실제 출석한 경우에만 하여 1일 계산하여 지급하고,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에 의한 위원회 활동 차원에서 현지조사 활동에 참석한 경우에도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단서신설 ></p>	<p>제3조(회의수당지급) ①-</p> <p>-----</p> <p>-----</p> <p>-----</p> <p>-----</p> <p>-----</p> <p>-----</p> <p>-----</p> <p>-----</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u>다만,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p>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 별 표 1 】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6조제3항 관련)

(단 위 : 원)

구 분	철 도 운 입	선 박 운 입	항 공 운 입	자 동 차 운 입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의 장 부 의 장	1 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6, 500	<u>20, 500</u>	<u>11, 000</u>
의 원	2 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6, 500	<u>16, 200</u>	<u>10, 500</u>

- 비 고 :
1.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등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운항만청장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개 정 안

【 별 표 1 】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6조제3항 관련)

(단 위 : 원)

구 분	철 도 운 입	선 박 운 입	항 공 운 입	자 동 차 운 입	현 자 교통비 (1일당)	숙 박 비 (1야당)	식 비 (1일당)
의 장 부 의 장	1 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6,500	<u>37,500</u>	<u>25,000</u>
의 원	2 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6,500	<u>18,000</u>	<u>18,000</u>

- 비 고 : 1. 자동차운입 및 항공운입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2. 철도운입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입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입을 지급한다.
3.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등운입을 지급하되, 운입의 정액은 해운항만청장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 영 삼 인

199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이 수 성

국무위원 김 우 석
내무부장관

○대통령령 제14,877호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자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회의수당"을 "회의수당(선거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지회의출석비는 회의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선거지 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2항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인 도서지역(연육지역을 제외한다)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수박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39조제4항중 "보시환경·가정복지·산업경제·문화관광·민방위 및 소방업무"를, 행정(2)부시장은 교통·도시계획·주택·도로"를 "보건사회·교통환경·지역경제·문화관광·민방위재단관리 및 소방업무"를, 행정(2)부시장은 도시계획·도로·주택"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지방의회의원 회의수당 지급범위(제15조관련)

구 분	회의수당 지급범위	선거지회의출석비 지급 범위
시·도의회의원	일 60,000원 이내	별표 6의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에 의한 교통운임(연락교통비를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3종의 1) 범위 이내
시·군·자치구 의회의원	일 50,000원 이내	

◇地方自治法施行令 改正理由

지난 7월부터 第2期 地方議會가 出缺함에 따라 그동안 地方議會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地方議會議員의 원활한 議政活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主로 骨子

가, 選擧地나 烏巢地에서 거주하는 地方議會議員의 경우에는 地方議會의 회의출석시 交通費·宿泊費등이 추가로 소요되지만 現행 議政活動費는 모든 地方議會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選擧地와 烏巢地에서 條例가 정하는 지역의 地方議員이 회의에 출석하여 宿泊하는 경우에는 選擧地會議出席費를 會議手當에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함(令 第15條第1項).

나, 會議手當은 地方議會議員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만 지급하여 왔으나 公休日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休日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會議手當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令 第15條第2項).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 영 삼 인

199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이 수 성

국무위원 김 우 석
내무부장관

○대통령령 제14,878호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자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건단중 "서울특별시"를 각각 "특별시"로 하고, 동항 중단중 "서울특별시"를 "특별시"으로 한다.

제21조중 "완남동보" 또는 경우에 "완남동보"로, "공무원"을 "공무원"로, "주소지"를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로, "공무원(주소와 영업장소가 상이할 때에는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경유하여야 한다)"를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 중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